

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신동원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633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6년 04월 06일

발 의 자: 신동원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경기문, 고광민,
곽향기, 김규남, 김용호,
김원태, 김재진, 김춘곤,
김태수, 김혜영, 남궁역,
남창진, 도문열, 문성호,
유만희, 이경숙, 이새날,
이성배, 이종태, 이효진
의원(21명)

1. 제안이유

- 2025년 5월 19일 공포·시행된 「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(서울특별시조례 제9628호) 제3조1항제4호에 따라, 서울시는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범위를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뿐만 아니라 유족의 배우자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음.
- 그러나 같은 조례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자를 여전히 「독립유공자법」상의 등록된 자로만 한정하고 있음. 이에 같은 조례 내에서 지원대상자와 지원사업의 대상자의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.
- 또한, 같은 조례 제3조1항제6호의 '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' 규정은 조문의 명확성과 구체성이 부족하여 이를 삭제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지원사업의 명확성과 구체성이 부족한 조문 삭제 (안 제3조1항제6호 삭제).

나. 조례의 지원대상자를 지원사업 대상자와 일치(안 제4조 삭제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독립유공자법」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유족”을 “유족 등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.

제4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지원사업) ① 서울특별시장 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.</p> <p>1. ~ 5. (생 략)</p> <p>6. <u>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u></p> <p>② (생 략)</p> <p>제4조(지원대상자) <u>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서울특별시 관할 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법 적용대상으로 등록된 자로 한다.</u></p>	<p>제3조(지원사업) ① ----- ----- ----- <u>유족 등</u>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

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의 대상자 범위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, 개정에 따른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과
재정분석과장	이 선 희
추계세제팀장	김 중 헌
추계분석관	선 동 규

☎ 02-2180-7952

e-mail : abasiclife@seoul.go.kr

※ 이 자료는 의안 발의 참고용입니다.